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춘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박춘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봉양순,
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
신복자, 유정인, 윤기섭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영실,
이용균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나.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함(안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정원관련”을 “정원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정원관련”을 “정원 관련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포상)”을 “(표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”을 “표창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、시행) ① (생략)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〈신설〉 4. (생략) ③ (생략)	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、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시민정원사의 운용 등) 시장은 <u>정원관련</u>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,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 〈신설〉 〈신설〉	제17조(시민정원사의 운용 등) ① --- <u>정원 관련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 ③ <u>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
제18조(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)

① (생 략)

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

2. ~ 4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22조(포상)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·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제18조(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 정원 관련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표창) ① -----

----- 표창-----

---.

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(시민정원사의 운용 등)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(시민정원사의 운용 등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※시민정원사 사업 관련 참고 자료로 2025년 5분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설명서를 제시함(붙임1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[붙임 1] 2025년 5분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설명서

□ 사업목적

- 시민 스스로 생활공간(집, 학교, 직장 등) 곳곳에 꽃, 나무 심기 등 정원문화 확산 및 건강한 녹색 사회 구축
- 양질의 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원분야 전문가 양성

□ 사업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3조~제17조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대 상 지 : 아파트, 상가, 동네, 골목, 학교 등 서울시 내 전역
- 사 업 비 : 238,600천원(시비)
- 사업내용
 - 시민정원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녹색교육 추진
 - 기업의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
 - 대시민 소통을 위한 도시녹화 운동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

□ 추진경위

- 2013. ~ 2022. : 서울,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
 - 시민 등 1,134,204명과 함께 1,645만주 식재
 - 녹색교육 4,707명 수료 및 시민정원사 687명 배출, 역량교육 개설·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
- 2023. ~ 2024. : 서울, 초록 물들이기 프로젝트 추진
 -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한 시상식 개최(조경상, 푸른도시상 등) 등
 - 시민정원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녹색교육 추진
 - 기업의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
 - 대시민 소통을 위한 도시녹화 운동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